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37
----------	-------

발의연월일 : 2026. 6. 9.

발 의 자 : 김주영 · 이학영 · 윤종균
김태선 · 소병훈 · 홍기원
박 정 · 장철민 · 문진석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창업 환경 악화로 인해 창업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36.4%에 그치는 등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와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u>2026년 12월 31일</u> 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u>2029년 12월 31일</u>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